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5. 21 선고 2021가단4688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1. C 주식회사

2. D

3. E

4. F

5. G

변 론 종 결 2021. 5. 7.

판 결 선 고 2021. 5. 21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,926,460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가. 피고 C 주식회사, E, F

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항 제3항)

나. 피고 D, G

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이정권

별지